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나79591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99696 판결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D, E, F, G(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

고에게 193,805,128원 및 그 중 29,984,78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0,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4. 16.부터 1994. 5. 1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서 1990. 5.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피고, 제1심 피고들	H	동작세무서장	33,550,000원	1990. 5. 21. - 1992. 7. 10.	상속세 연부연납
2		I		30,800,000원	1990. 5. 21. - 1993. 7. 10.	

나. 그 후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이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1992. 6. 25. 31,848,570원, 1994. 4. 15. 30,800,00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및 제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며, 동 적용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5050호로 이 사건 보험금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5.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865,439원 및 이 중 31,732,570원에 대하여는 2001.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30,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4. 16.부터 1994. 5. 1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08. 5. 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 이후 1,863,786원을 추가로 변제받아 현재 피고와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1심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

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9. 같은 법원 2014하단 10003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8. 18. 같은 법원 2014하단10003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9.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면책채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행사한 것이고, 원래의 채권도 조세채권이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동작세무서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인 동작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한 것일 뿐 원고가 피보험자의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종전 판결을 받을 당시 조세채권 대위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종전 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른 채권은 구상금채권일 뿐, 조세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는 변제자대위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채권을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보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판력에 관한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의 효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소에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전소의 판결내용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별개의 사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8. 18. 면책결정을 받

았으므로 피고의 면책결정은 확정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오로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은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